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11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조지연·엄태영·박덕흠

이인선 • 김소희 • 김정재

박성훈 · 서명옥 · 박상웅

이성권 의원(10인)

제안이유

2024년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상회하는 등 근로자의 기본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법령에서는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고, 국가가 먼저 대위변제를 하고 체불기업에 구상청구를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체불임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면서도 오히려 계열사 합병, 주식 매수,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 확장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특히 자산 매각을 통해 임금 체불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대지급한 임금에 대한 변제조차 외면하는 등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체불된 임금을 변제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 신주발행, 주식상장 등 사업 확장 행위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최우적으로 지급토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함께 도모하고자 함(안 제174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주요내용

- 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회사에 대해 합병을 제한함(제174조제1항 단서).
- 나. 재직 중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74조제1항 단서에 위반한 합명 회사의 합병에 대해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주식 회사 및 유한회사에 준용함(제236조제2항, 제530조제2항, 제603조).
- 다. 임금체불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및 신규상장을 제한함(제416조의2 신설).
- 라. 임금을 체불한 회사가 규정을 위반하여 합병, 신주발행 또는 신규 상장을 한 경우 책임자를 처벌함(제624조의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4조(회사의 합병)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재직 중 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계속되고 있는 경우. 다만, 체불임금의 존부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2. 제1호에 따른 체불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된 경우

제23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前項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② 재직 중 또는 퇴직한 근로자는 제174조제1항 단서를 청구의 기초로 하는 경우에 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6조의2(임금체불회사의 신주발행 제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174 조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미상장회사에 한한다.

1. 신주발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상장

제53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第237條"를 "제236조제2항, 제237조"로 한다.

제530조(준용규정)

제60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第237 條"를 "제236조제2항, 제237조"로 한다.

제603조(준용규정)

제6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4조의3(임금체불회사의 합병 등 제한 위반의 죄) 제174조제1항 단서 또는 제416조의2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74條(會社의 合併) ① 會社는	제174조(회사의 합병) ①
合倂을 할 수 있다. <단서 신	
<u>설></u>	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u>다.</u>
<u> <신 설></u>	1. 재직 중 또는 퇴직한 근로자
	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
	의2제1항에 따른 임금등을 지
	급하지 아니하고 그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
	간 이상 계속되고 있는 경우.
	다만, 체불임금의 존부에 대
	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u><신 설></u>	2. 제1호에 따른 체불총액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u>이 된 경우</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第236條(合倂無效의 訴의 提起)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재직 중 또는 퇴직한 근로
	자는 제174조제1항 단서를 청
	구의 기초로 하는 경우에 제1

② <u>前項의</u> 訴는 第233條의 登 記가 있은 날로부터 6月內에 提起하여야 한다.

<신 설>

第530條(準用規定) ①(생략)

- ② 第234條,第235條,<u>第237條</u> 내지 第240條,第329條의2,第3 74條第2項,제374조의2제2항 내 지 제5항 및 第439條第3項의 規定은 株式會社의 合倂에 관 하여 이를 準用한다.
- ③ ④ (생 략)

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u>.</u>
제416조의2(임금체불회사의 신주
발행 제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174조제1항 각 호에 모두 해
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2
호의 경우는 미상장회사에 한
한다.
<u>1. 신주발행</u>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
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
<u> </u>
제530조(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
<u>ㅇ</u>)
② <u>제236조</u>
제2항, 제237조
③ • ④ (혀해고 간으)

4條, 第235條, <u>第237條</u> 乃至 第240條, 第443條, 第522條第1項・第2項, 第522條의2, 第523條, 第524條, 第526條第1項・第2項, 第527條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529條의 規定은 有限會社의 合併의 境遇에 準用한다. <신 설>

제236조제	2항,	제237
<u>조</u>		
	·- .	
제624조의3(임금체불회	사의	합병
등 제한 위반의 죄)	제17	74조제
<u>1항 단서 또는 제</u>	416조	:의2를
위반한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